

〈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〉

항 목	세부항목	기 준	사용한도액
인건비	강사비	•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	
사업 진행비	선별검사비	• 종합심리검사 기준(지능검사 포함)	
	교재비	• 학습자 수의 130%까지 지원 • 학습자의 교육실시 등을 위한 각종 교재 구입비	- 1인 월 20,000원
	홍보비	•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- 홍보물, 현수막 등 제작(불법현수막 게시 금지) - 신문·방송·인터넷 등 광고·홍보·선전 목적 사용 금지 ※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※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	
	물품구입비	•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※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※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(납품) 사진	
	프로그램 추진비	•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 - 다과비(1인당 최대 4,000원×인원) - 체험학습 입장료(입장료×인원) - 체험활동 재료비 등 - 차량임차비(차량유류비 지원 불가) ※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※ 임차에 따른 품의서, 지출결의서, 견적서, 행사사진 첨부	

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

1. 강사수당

가. 일반 지급기준

구분		지급기준	지급액 (만원)	지급대상
일반	특강 (Ⅰ)	1시간당	100 이내	◦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	특강 (Ⅱ)	최초1시간	40	◦ 대학교 총장(급)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◦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·예술·종교인·기업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◦ 전·현직 장관(급)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
		초과(매시간)	20	
	특강 (Ⅲ)	최초1시간	30	◦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◦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·예술·종교인·기업 임원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◦ 전·현직 차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
		초과(매시간)	20	
	일반 (Ⅰ)	최초1시간	23	◦ 특강이외 대학교수·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◦ 특강이외 기업임원(급) 인사 ◦ 시민단체 임원, 연구소 연구원 등 ◦ 전·현직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
		초과(매시간)	12	
	일반 (Ⅱ)	최초1시간	12	◦ 전·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
		초과(매시간)	10	
보조강사	1시간당	4		
정보화교육	정보화 (Ⅰ)	최초1시간	15	◦ 대학교수, 박사·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◦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
		초과(매시간)	10	
	정보화 (Ⅱ)	최초1시간	10	◦ 박사학위, 기술사소지자,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◦ 전·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
		초과(매시간)	8	
	정보화 (Ⅲ)	최초1시간	8	◦ 정보화강사1,2 이외의 강사 ◦ 전·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
		초과(매시간)	7	
사이버 정보화	교육기간 내 1일당	2	◦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,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	
보조강사	1시간당	4		
글로벌 교육 프로그램	전체 강의	S급	20	◦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		A급	15	◦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◦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		B급	13	◦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
		C급	11	◦ 전체강의 A.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
	분임 강의	A급	11	◦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◦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		B급	10	◦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 강사 경력자
		C급	9	◦ 분임강의 A.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
사이버교육	교육기간 내 1일당	2	◦ 교육기간 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,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	

- ※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청탁금지법')제2조제2호 "공직자등"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함.
- *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속한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정한 상한액 기준은 다를 수 있음.
- ※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등이 지급대상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우선 적용
- ※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
- ※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,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
- ※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

나.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

구분	지급기준	지급액 (만원)	지급대상
퍼 실 리 테 이 터	(Ⅰ)	1~3시간 (시간당)	23 ◦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◦ 전·현직 장관(급)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◦ 기업 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		3시간 초과 (초과 매시간당)	
	(Ⅱ)	1~3시간 (시간당)	20 ◦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◦ 전·현직 차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◦ 기업 임원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
		3시간 초과 (초과 매시간당)	
	(Ⅲ)	1~3시간 (시간당)	13 ◦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◦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◦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
		3시간 초과 (초과 매시간당)	
	(Ⅳ)	3시간(시간당)	11 ◦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◦ 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◦ 조교수, 전임강사(급) 대학교수
		3시간 초과 (초과 매시간당)	

- ※ FT 요건: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

다. 지도.평가 등 강사수당

지급 기준	지급액 (만원)	지급대상
1시간	10	◦ 분임활동을 지도, 평가하는 강사 ◦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◦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심사위원 ◦ 외국공무원과의 포럼에 참석한 강사
1회	10	◦ E-mail, 서면으로 요청 시
1편	5	◦ 경연대회 참가 작품 서면심사

- ※ 교육훈련 정책·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,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 「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경기도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의 “위원회 참석비”를 준용
- ※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초연설, 주제발표자에게는 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.
- ※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 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'가'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.

라. 지급특례

구분	특례사항		비고
단체 예술공연	지급기준	지급액(만원)	※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%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.
	5인 이하(1시간)	50	
	6인 ~ 10인(1시간)	60	
	11인 이상(1시간)	70	
강의시간 산출	◦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◦ 1시간 초과 강의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 (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)		
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	◦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-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◦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◦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(주제 포함)이 다른 강의		
보조강사	◦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,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◦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		※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%범위에서 감액지급 가능

2. 외래강사여비

- ☐ 강사 여비는 대상과 관계없이 일비 2만원을 지급함.

3. 원고료 지급기준

구분	지급기준		비고
지급단가	12,000원 / A4 1면		
지급한도 (기준면수)	강의교재(안)	6면 / 강의시간당	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% 범위에서 지급 가능
	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	강의시간 제한없음	
A4 1면 기준	○ 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.꼬리말 15 또는 300단어		※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※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.5매를 A4 1면으로 산정
지급특례	○ 강의 교재(안)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"A4 1면당 50,000원 또는 편당 300,000원"의 범위 내 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		
수정원고 등	○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- 70% 초과 수정 시 : 전체 지급 - 30~70% 수정 시 : 해당 원고료의 50%만 지급 - 30%미만 수정 시 :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※ 복사원고, 표지,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,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※ 부교재)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.		

※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

4.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

-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%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, 교육의 특성 및 여건,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음.

다만, 당해 교육기관 직원은 미지급

※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 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 후 시행

5. 외국공무원과정 지급기준

- 외국공무원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, 통·번역비 등은 KOICA 규정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통·번역센터 요율을 준용한다.